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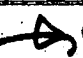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 684

시행일자 1997. 3. 24.

(경유) (제1안)

수신 내부절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김철수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중개정기준발령

1.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중개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예규안 각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예규제 630 호

제목 예규 시보게재

1.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중개정기준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3. 25(화).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630호. 끝.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회계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중개정기준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1997. 3. 25(화).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630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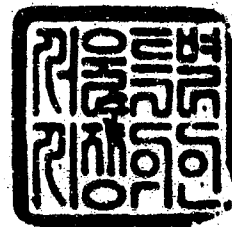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중개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조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증개정기준안

1. 개정이유

'97.1.1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이 '96. 12. 31.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술용역의 사업시행공고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단, 국제입찰대상 용역의 경우 4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명시(안 3조)
- 나. 예비예정가격의 결정및 공개금액을 정부고시금액인 1.51억원 미만으로 조정(안 10조)
- 다. 낙찰자결정 대상금액 조정(정부고시금액 1.51억원)및 낙찰율을 현행 100분의 88이상에서 100분 90이상으로함. (안1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문대비표, 별첨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중개정기준안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의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소속 관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호의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입찰참가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등.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에 의거 입찰참가자를 사전선정하여 집행하는 기술용역등.

제3조제2항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제입찰대상용역은 40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중"10억원"을 "1.51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및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추정가격이 1.51억원미만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추정가격이 1.51억원이상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한다.

제14조중 "공고일"을 "공고통"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소속 관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호의 기술용역에 적용한다.</p> <p>1. <u>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외거 입찰참가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집행하는 1억5천만원이상 건설 기술용역<신설></u></p> <p>2. <u>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4조에 외 거입찰참가자를 사전선정하여 집행하는 3억 원이상 기술용역<신설></u></p> <p>제3조(입찰공고)①(생략)</p> <p>②기술 및 가격동시입찰시행공고시에는 국가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p> <p>③(생략)</p> <p>제10조(예정가격결정및공개)</p> <p>① ~ ③(생략)</p> <p>④다만, 추정가격이 <u>10억원이상인</u> 용역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소속 관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호의 기술용역에 적용한다</p> <p>1. <u>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외거 입찰참가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집행하는 건설기술 용역등</u></p> <p>2. <u>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에 외거 입찰 참가자를 사전선정하여 집행하는 기술용역등</u></p> <p>제3조(입찰공고)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 단, <u>국채입찰대상용역은 40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③(현행과 같음)</p> <p>제10조(예정가격결정및공개)</p> <p>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u>1.51억원</u>----- ----- -----</p>

현	개정안
<p>제11조(낙찰자결정) ①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3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p> <p>②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p> <p>③(생략)</p> <p>제14조(기타사항) 용역수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일 제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운영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바에 의한다.</p>	<p>제11조(낙찰자결정) ①추정가격이 1.51억원미만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3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p> <p>②추정가격이 1.51억원이상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14조(기타사항) ----- 공고등----- ----- ----- ----- -----</p>

서울특별시

우편번호 100 - 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 TEL (02)731-6251 ~ 4 FAX (02)731 - 6955

문서번호 회계 45101 - 1198

시행일자 1997. 3. 17.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결	법무담당관	3	지시	
접	일자	1997. 3. 17.	결재·공람	법제계장
수	번호	1009		[인]
처리과				
담당자				

제목 기술용역운영기준개정안 발령의뢰

우리시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및가격통시입찰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예규를 발령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및가격통시입찰운영기준 4부
 2. 발침서 사본1부. 끝.

회 계 과

[Handwritten Signature]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제5호의 규정과 농림부의 쓰레기유발부담제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쓰레기발생량이 많은 배추의 부담금요율을 우선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출하농산물의 산지포장화를 유도하여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고, 시장내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물류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코자 함.

149

-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산지포장화가 미흡한 배추에 대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현행 톤당 3,000원에서 톤당 5,000원(톤당 2,000원인상)으로 상향 징수함.

~~148~~